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 ·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10:00 사회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인사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20발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45 지정토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희영 카카오뱅크 대표

11:45 종합토론

12:20 폐회

목차

인사말	토론회 인사말 / 이학영 의원	04
인사말	토론회 인사말 / 전해철 의원	06
발제1	발제문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8
토론1	토론문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
토론2	토론문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35
토론3	토론문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
토론4	토론문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3
토론5	토론문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50
토론6	토론문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53

인사말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학영 의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해철 의원님과 참여연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는 등 큰 부침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필요했던 금융업계는 IT업계와 손을 잡고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으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고, 20년 만에 은행업을 인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ICT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영업,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둔화된 예금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업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그 결과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2001년 추진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ICT기반의 혁신성 있는 서비스 창출에 대한 의문도 큰 상황입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결제시스템인 Pay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염려와 기대에 대해 진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규제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은산분리가 오래된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금융당국, 기업의 입장은 향후 정무위에서 진행될 법안심사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학영

인사말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국회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해 금융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로 등장한 이래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기업이 주도하는 은행들이 출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등 금융영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은산분리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고객의 예금이 대주주인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 유지 또는 계열기업의 확장 등에

활용되는 소위 은행의 자금고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이들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 공여를 받은 모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시, 은행으로 부실이 전가되어 은행의 건정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특성 상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하더라도 재벌 ICT 기업이 금융산업을 장악하는 위험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융과 IT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오늘 토론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과 금융 산업 모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해철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 차

- 왜 은산분리인가?
 - 원론적 논거
 - 미국의 제도
 - 저축은행의 경험
 - 재벌로부터의 독립
 -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 인터넷 전문은행의 표면적 지향점
 - 지향점을 달성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해법
 -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핀테크
 - 외국 산업자본의 시장 접근권과 통상 마찰
-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
 - K Bank는 과연 현행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
 - 금융위는 과연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은산분리인가?

왜 은산분리인가: 경제 원론 복습

- 은행은 화폐(M1)의 발행기관
 - 기본적으로 M1이란 은행이 발행하는 부채증서
 - Payment of debt by means of **[bank's]** debt: Hicks(1989)
- 신용창조의 핵심 전제 조건: 자신이 발행하는 부채증서가 유통될 수 있다는 것
 - 은행: 자신의 부채증서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관
 - pure credit system: 신용창조를 통한 통화공급의 내생화 (Wicksell (1898)) => 실물의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력 확보
- How to sustain the confidence of banks?
 - 생산 부문의 위험과 신용수단 위험의 분리
 - 2가지 안전장치의 결합:
 - ⇒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lender of last resort
 -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연원이 중앙은행이었던 이유₄

왜 은산분리인가: 미국의 제도

- 미국 (BHCA, Change of Bank Control Act)
 - 은행을 지배하는 (매우 광의의) 회사=BHC
 - “**bank holding company**” means any company which has control over any bank or over any company that is or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by virtue of this chapter. (12 USC §1841 (a)(1))
 - 은행을 지배하는 개인들의 비공식적인 모임도 “**회사**” 가능
 - 일부 BHC 적용에 예외 있음 (다음 슬라이드 참조)
 - BHC는 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 은행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활동만 가능
 - to be so closely related to banking as to be a proper incident thereto (§1841 (c)(8))
 - 기존에 영위하던 산업활동은 5년에 걸쳐 정리
 - no bank holding company shall retain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such shares **afte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repeal of such exemption, ((§1841 (e))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

12 USC §1841 (c)(2)(H)(i) : “Bank” 정의의 예외: ILCs, IBs

(H)An **industrial loan company, industrial bank**, or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i)an institu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State which, on March 5, 1987, had in effect or had under consideration in such State’s legislature a statute which required or would require such institution to obtain insurance under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1811](#) et seq.]—

(I)**which does not accept demand deposits** that the depositor may withdraw by check or similar means for payment to third parties;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II)Which has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000,000**; (총자산 규모가 미화 1억불(한화 약 1,200억원) 미만이거나) or (중략)

※ OK 저축은행의 총자산: 약 3조 4천억원 (2016.9.30 현재)

6

미국 금융법에서의 ILCs

- 산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ies:ILCs)
 - 연방법인 BHCA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여수신 기관
 - 산업자본이 소유 가능
 - 약 7개주 (주로 유타) 주법에 의해 설립
 - Fed 미가입, FDIC 부보
- ILC 관련 미국 규제는 예금보험 부보 + **규제 강화**
 - 80년대 이전: ILC는 비규제, 비보험 영역 조업 => 도산
 - 1982: the 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에 의해 FDIC 규제 영역으로 포섭
 - 1987: Competitive Equalitiy Banking Act (CEBA) : 모든 FDIC 부보은행을 BHCA 상의 “은행”으로 정의하여 규제 강화하고 기존의 ILC 적용 조건을 명확화

FDIC 가입 승인을 위한 별도 조건

- https://www.fdic.gov/regulations/examinations/supervisory/insights/sisum04/industrial_loans.html#dtop10
 - ([이사 과반수의 독립성](#)) The organizers will appoint a board of directors, **the majority of whom will be independent of the bank's parent company and its affiliated entities.**
 - ([집행 임원의 경험과 독립성](#)) The bank will appoint and retain knowledgeable, experienced, and **independent executive officers.**
 - ([사업계획의 분리](#)) The bank will develop and maintain a current written business plan, adopted by the bank's board of directors, that is appropriate to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bank and **separate from the business plan of the affiliated companies.**
 - ([은행 경영의 자율성](#)) To the extent management, staff, or other personnel or resources are employed by both the bank and the bank's parent company or any affiliated entities, the bank's board of directors will ensure that such arrangements are governed by **written contracts giving the bank authority and control necessary to direct and administer the bank's affairs.**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

-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전상수) 검토보고서 (p.58)

미국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 □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미만으로 산업자본이 지분 보유 가능 ※ 과거 예외적으로 주법(6개주)에 따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허용한 바 있고, 현재도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은행 영업중
----	--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LC, IB 등이 연방 BHCA를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시적 예외 때문
 -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님
 -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
 - 연방법 적용 면제 되려면, 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 산업자본 지배 ILC는 모두 주법에 의해 인가된 회사들

9

왜 은산분리인가: 저축은행 경험

-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경험은 부재
 -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음
 - 따라서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음
-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 + 상업 여신” 수행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
-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불행한 추억 다수 보유
 - 단골 위규 내용: 출자자 여신한도, 동일차주 여신한도 위반
 -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도 미비
 - ⇒잡은 저축은행 도산으로 귀결
 - ⇒예보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및 공적 자원 소요 발생

10

왜 은산분리인가?: 재벌

- 총수의 지배권 구축에 활용: 삼성 (아직도 존재)
 - 삼성생명의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지배
 - 이재용을 위한 삼성생명과 한빛은행 간의 불법 자산스왑 (1999년 1월)
- 계열사 부도시 불법적 계열사 지원: 삼성 (금감위, 1999.12.24))
 - 삼성생명이 5개 은행 특정금전신탁 동원하여 삼성자동차 CP 1,210억원 매입
 - 삼성생명이 외환은행 등 4개 은행 후순위채 매입 통해 삼성자동차 등 4개 계열사의 사모사채 2,380억원을 매입
 - 삼성투신운용,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부당 지원 징계 (공정위, 2001.1.31))
- 그룹 부도 임박시 불법적 유동성 조달: 동양 (2013.9)
 - “동양증권 + 대부업체” 로 규제 사각지대 돌파 (금산법 24조, 금융지주회사법)
 - 동양증권의 자금 조달 + 대부업체의 자금 운용 통해 유동성과 지배력 확보 => 대표적 shadow banking

11

왜 은산분리인가?: 정치권

-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불법 매각(2003. 9)
 - 기재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의 보고 문건
 - 금융감독원 진흥수 수석조사역
 - 법무법인 세종 송00/이00 변호사
-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2012.1)
 - 금융위원장 김석동: 론스타 자료만으로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려워”
 - 금감원장 권혁세: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라 볼 수 없다”
 -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조사: 권혁세 금융감독국장 때 시작 (2007) => 론스타는 일본의 골프장과 목욕아서원 등 산업자본 자회사 신고하고 2조원 초과 시인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 자료)
 - 매각 라인: ??-김석동(위원장)-추경호(부위원장)-정은보(금융정책국장)
- 왜 역대 정부는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했을까?
 - 국민의 정부 말기 시작 => 참여정부 초기 론스타에 매각 => 이명박 정부 때 탈출 => 박근혜 정부까지 ISD로 연결
 - 은산분리 규제가 아니면 “**절대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

12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1

인터넷 전문은행의 표면적 지향점

-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
 -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더 낮은 조달금리?
 - 더 우월한 대출심사 기법?
 - 대량 거래를 통한 규모의 경제?
 - 더 방대한/보완적 개인신용정보?
- FinTech 또는 ICT+Banking 구현
 - 금융권 Big Data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유물인가?
 - 지급결제 업무 현대화를 위해 은행업 면허가 필수인가?
 - 필수 아니면 굳이 은행 소유규제 완화 불필요
 - 필수라면 기존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현대화가 더 필요

표면적 지향점과 현존 제도

- 저축은행 소유 대안
 -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
 - 요구불 예금 수신 + 상업 대출 영위 가능
 - 예금보험의 부보 혜택
 -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
 - 미국의 산업자본 소유 ILC는 우리나라 저축은행보다 소규모

=>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
- 은행업의 효율화를 위한 우회적 압박 수단?
 - 감독상 유도가 더욱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수단임
 - FinTech의 주요 측면은 은행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인터넷 은행의 전유물일 수 없음

1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문제

- 과연 대주주인 ICT 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가?
 -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
 -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는 활용 가능하지만
 - 이런 정보는 “자유스럽게 유통가능”하기 때문에
 - 굳이 대주주로부터 수령할 필요 없이 **시장 거래를 통해 확보 가능**
- 결국 요약해 보면
 - 가지고 싶은 정보는 대주주의 것이라도 가질 수 없고,
 -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굳이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만들 필요가 없음
- ICT 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 없음

1

외국 산업자본의 시장접근권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 불가피**
 - 외국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국내의 사업자와 동등한 시장 접근권(market access) 보유
 - 다자간(WTO), 양자간(FTA) 통상 협상에서 내국인 대우는 기본 조건
 - 설사 ICT 회사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국의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의 ICT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
 - 예: 중국의 알리바바
 - 산업자본 일반으로 소유 규제 완화될 경우 잠재적 대주주 대상 확대
 - 예: 미국의 Walmart의 ILC 진출

17

현안에 대한 의견

K Bank는 과연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미국법의 가상 적용

- 금융위, K Bank의 은행업 영위 인가 (2016.12.14)
 - 만일 미국이었다면 유타 주에서 Industrial Bank로 인가 받을 수 있었을까?
 - 자본금: 2,500억원 >> us \$100 million => **BHCA 면제 불가** => BHCA 적용 불가피
 - 대표: 심성훈 (집행임원의 독립성 불충족) => **UTAH 주법 위반 및 FDIC 가입요건 불충족**
 -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는가?
 -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한다면 그 회사는 산업자본인가?
- => BHC 여부는 “주주들간의 **association의 강도가 company에 해당할 정도로 긴밀한가?**”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이 관건

19

K Bank는 과연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국내 은행법의 적용

-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누구인가 여부
 -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대단히 넓게 정의된 공동 의사결정자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
 - 가상적으로 만일 KT와 우리은행이 의결권 공동 행사 하면
 - 우리은행은 산업자본이 되고, 은행 소유규제 위반
-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20

금융위의 국회 입법권 존중

- 금융위는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음
 - 금융권 빅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중
 -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 Bank 인가가 적절했는가?
- => 우선 K Bank 인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

토론문

고동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은산(銀産) 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 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6조의2 제3항 제4호 신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6조의2 제3항 제4호 신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에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내지 대기업 집단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게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특례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안 제5조).

□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특례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34% 이내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특례법안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 한도도 50%까지 높이고 있어 다른 2개 특례법안보다도 높은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2.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은산 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가.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 이어서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유혹이 존재함.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게 됨.
- 물론 엄격한 차단벽을 설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금고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차단 장치가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차명 거래 등을 통하여 범망을 회피한 부실 대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감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는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했다는 것(차명 거래 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2013년의 ‘동양 사태’에서 보듯이 (주)동양증권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 이러한 사례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부실화 되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감.
 -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하지만 은행업의 보다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업에서 발생하는 위험(risk)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임.
- 아무리 최신 금융기술 기법을 개발하더라도 여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실이 발생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체제가 여전히 중요한 것임.
- 정보통신기술 보다도 은행의 영업 전략이 더 중요한 것임.

-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임.

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

- ‘금융주력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도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통신기술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현재 은행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음.
 -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의 ‘모바일뱅킹’ 성공 사례가 있음.
-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이런 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는 것임.
- 오히려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임.

라.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 선임에서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어,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 기업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은행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관련법상 은행 실무 경험이 없어도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장이나 사내이사에게는 적극적 자격 요건으로서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반면에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적극적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이 경우 은행 경영 실무 경험이 없는 은행장이 전문성을 요하는 은행 경영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임.
 - 물론 기업의 경영 경험이 은행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몇 년 동안의 은행 경영 경험을 쌓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은행 경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임.
- 은행 실무 경험이 없는 은행장이 은행 경영에 실패한 사례가 있음.
 - 우리은행의 경우 황영기 행장(증권회사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이 없었음) 재임 시(2004. 3 ~ 2007. 3) 무리한 외형 성장 전략의 추구 결과 위험이 높은 신용파생상품(CDO, CDS)에 투자했다가 투자 실패로 10조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최근 선임된 (주)케이뱅크은행과 (주)한국카카오은행의 은행장(대표이사)이 은행 경영의 경험이 없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출신자 또는 증권회사 근무 경력자이어서, 앞서 언급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주)케이뱅크은행의 심성훈 은행장(대표이사)은 (주)케이티의 시너지경영실장을 역임한 (주)케이티 출신임.
 - (주)한국카카오은행의 이용우 공동대표이사도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 주로 증권회사 근무 경력을 갖고 있고, 윤호영 공동대표도 카카오 모바일뱅크 TFT 부사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출신임.
- 특히 은행장이 대주주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에 예외를 두게 되더라도, 이는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은산 분리’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으며,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신규 일반 은행 설립 허용 방침을 발표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고,”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과점화된 은행산업 구조를 휘젓고 경쟁을 촉발하는 ‘메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2017. 1. 23일자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은행 산업의 ‘메기’가 되어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임.

○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현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일반 은행도 더 설립이 되어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신규 은행 설립 허용 방침을 발표하는 것임.

○ 경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도 무려 24년 동안 신규 일반 은행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은행 산업이 과점 상태에 있어서 경쟁과 혁신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은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도 1982년, 1991년

각각 설립된 후발 주자 은행이었음에 비추어볼 때 은행 신규 진입 허용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새로운 일반 은행이 출범함으로써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완화의 문제점

김성진 /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되는가?

○ 동양증권 사태

2013년 동양그룹이 전반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정보가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로 매각하였다. 검찰에 의하면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총 1조3032억 원 상당을 발행해 이중 9942억 원 상당이 지급불능 처리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영진이 동양증권 지점별로 매각 물량을 할당하고 다른 재별이 자금지원을 약속했다는 미확정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선 결과이다.

○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가 되는 질문

동양그룹이 은행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경영권을 오로지 행사하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동양그룹이 지배하고 있다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부정적으로 확답을 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동양그룹이 은행을 동원해 계열사를 지원했을 경우, 대량 예금인출 사태, 즉 뱅크런

(bank-run)을 막을 수 있는가?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다. 은행이 부실할 경우 예금주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시에 예금 지급 청구가 몰릴 경우 은행은 대출을 즉시 회수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한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른 은행 예금주들도 지급청구에 나서게 된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위기는 곧 금융시스템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 은행의 동반 부실화의 가능성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행위규제는 이를 어길 경우 사후적인 처벌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 감독기관의 감독기능도 위법한 행위를 한 다음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양증권 사태의 경우 행위규제와 감독기관이 제대로 기능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산업자본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동반부실화의 가능성은 기업의 존속 자체가 걸린 문제이므로 재벌이냐 재벌이 아니냐 여부, 또는 업종이 무엇이냐와 무관하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같은 규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이미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규제이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 이런 ‘행위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장점이 있는가?

○ 보유 정보의 활용가능성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거로 정보산업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돌려서 특정인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활용 가능한 것은 개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권 공유 정보,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반 은행들도 모두 보유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존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제를 위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 보유 정보의 비차별성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비식별화라는 ‘눈속임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통시킴으로써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만일 정부의 시도가 성공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무제한 유통된다면 그때는 일반 은행들도 그런 정보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는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별한 정보 우위를 점유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결국 어떤 경우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낮은 금리로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3. 저축은행을 하면 안 되는가?

중금리 대출을 꼭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업 방식을 택하면서도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업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 저축은행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여 중금리로 대출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런营业을 하면 그만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營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남득되지 않는다.

4.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정부의 행태

정부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분보유규제를 4%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1단계로 현행법 체계하에서 1~2개를 인가하고, 2단계로 은행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내 주었다.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법에 따라 본인가를 받았고, 카카오뱅크는 현재 본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이다.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다.

○ 국회의 입법권 침해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태이다.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필요한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폭넓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입법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회가 법 개정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하여야 제대로 된 입법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의 법개정 전에 법개정을 전제로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는 ‘법개정이 안 되면 그 사업자는 어쩌냐’는 식의 상황을 만든 것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자유로운 입법 논의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가 정책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이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누구를 이해관계자로 끌어 들였다고 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공감도 없이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모든 경제 주체는 법을 따라야 한다. 이미 은행법을 준수하여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법상 은행이다.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

토론문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2개안) 및 특례법 제정안(3개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임.

<표> 법안별 주요 내용 비교

	은행법 개정(안)		특례법 제정(안)		
	강석진의원	김용태의원	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유의동의원
최저자본금	250억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	의결권 있는 주 식의 50%	좌동	의결권 있는 주 식의 34% (단, '19.12.31까 지 인가받은 은 행에만 적용)	좌동	의결권 있는 주 식의 50%
	단, 개인총수 있 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	단, 개인총수 있 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좌동	-
대주주 신용공여 ¹	-	금지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금지	자기자본의 10% 이내
대주주발행 지분증권 취득 ²	-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금지	-
기타	-	-	·가중평균금리 상한 설정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영업 허용	·인가요건 정기 재 심사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인가취 소 ·인가 시 특례법 위반 발생 시 국 회 보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영업 허 용

주: 1) 현재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을 이내

2)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비금융주력자 등 20% 이상 주주에 대해 사전승인이 요구)과는 달리 별도의 감독지침*을 통해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
 - * 「타 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 (2000.8월)
-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증권·운카드·운보험 등 비은행 금융그룹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 일본의 경우는 은행·운비은행·운비금융주력자 등이 업무제휴를 위해 합자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
-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

(참고) 은행 지분보유 규제 해외사례

1. 미국

- 은행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25%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대출은행*(Industrial Loan Company)은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함에 따라 ILC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과거에 도입한 바 있음
- * 요구불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주로 일반대중에게 투자증서나 투자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공여를 행하는 금융회사로서 주(state)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2. 일본

- 1990년대까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여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었으나 인가정책 운용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실질적으로 금지
- 200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주요 주주(원칙 20% 이상)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보유 가능
-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별도로 「타 업종에 대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2000.8월)에서 인가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이 허용되었으며 2000.10월 인터넷은행인 Japan Net Bank 설립됨

3. 유럽연합(EU)

- 별도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 규제는 없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등을 통해 은행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토론문

조대형 /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핀테크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 시작을 준비 중이며, 카카오뱅크는 현재 본인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¹⁾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과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여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추가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기존 은행과의 경쟁 촉진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1) 2001년에는 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 상의 제약, 대기업 중심의 설립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중단되었음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은행과의 경쟁촉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증권회사가 도입된 증권산업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만으로는 현재 기대하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현행 「은행법」에서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현재와 같이 시범인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³⁾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은산분

2) 국내 증권산업의 경우 1999년 말 온라인증권사가 출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존 증권사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서비스 경쟁보다는 증권사 간에 수수료 인하 경쟁 등이 초래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은 증권산업 내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증권사의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온라인증권사와 일반 증권사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조대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095호, 2015.12.8.

리규제 완화 수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고화 가능성, 대주주인 ICT기업 부실의 은행전이 문제 등 부작용 방지방안 등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⁴⁾ 무엇보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설립 주체와 연계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유규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을 보면 현행 소유규제로 인하여 주주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비인가 과정에서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⁵⁾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입니다. 향후 법 개정 내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 간에 지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은산분리규제를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ICT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은산분리규제 관련 쟁점사항⁶⁾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ICT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ICT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상향하여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34% 또는 50%까지 보유

4)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고,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5)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법」 개정을 가정하여 권소사업 구성원 간에 미리 지분변경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하되,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은 동일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었음

6) 조대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00호, 2016.12.29.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ICT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은산분리(銀産分離)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인 ICT기업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16조의 2제1항).⁷⁾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16조의2제2항)⁸⁾.

해외 주요 국가의 은산분리규제 사례를 보면, 각국의 산업화 과정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은산분리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은행주식을 2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5% 이상 취득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은 2대 주주로 25%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은산분리규제가 없으나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도 은산분리규제가 없으나 은행 주식보유 비율이 높아질 때마다 단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은산분리규제가 현행과 같이

7)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8)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유지되는 경우에는 ICT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IC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할 경우 대주주로서 50% 수준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전이 방지,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사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⁹⁾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금지, 인가요건 정기적인 재심사 등이 있습니다.

셋째,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기업의 소유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주주(shareholder)의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2002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서 ①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② 모회사 등의 사업 리스크 차단 장치, ③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장치, ④ 자산의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4. 추가 논의사항

2017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 은행산업에 24년 만에 새롭게 진입하는 금융회사로서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대한 것처럼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겠지만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영업 초기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부실화의 우려가 있고,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운영체계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보안 등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예금이나 지급결제업무 등에서 서비스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전체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조달 및 자산규모의 확대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분야의 경험이 적은 ICT기업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정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이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발하므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에 전산설비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ICT업체들이 참여하여 복수의 제휴회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자자문업자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검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론문

최 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 금융소비자에게 창의적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음
 - VAN/PG사 연계를 최소화한 휴대폰 앱투앱, SNS나 이메일 등에 기반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에 비해 송금결제수수료 절감이 가능함
 - 카드·SNS·전자상거래 등 주주사의 빅데이터 정보에 기반한 정교한 심사모형으로 4~7등급의 중신용자,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내외의 중금리대출 공급
 - 예금 가입시 현금이자와 함께, 음원·게임포인트·택배 이용권 등 다양한 포인트 혜택의 추가 제공이나 선택이 가능해져, 기존 예금상품에 비해 이자가 다양화·확대되는 효과 기대
-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중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대부업까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할 것
- 일례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앞두고 대형은행(off-line mammoth)의 인터넷뱅킹 활성화, 은행·저축은행의 시장 선점을 위해 중금리상품 출시 등이 이어지고 있음
- IT와 금융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게 되면,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IT·벤처업계와의 동반성장도 가능
- 은행 직접채용 아니라 IT·핀테크업체 채용도 확대되고, IT업체(IT Solution 구축)와 핀테크 업체(간편결제 시스템 등)의 매출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인력채용] 카카오뱅크·K-뱅크는 각각 '16년중 약 200명 채용

2.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입법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대하는 바대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여 혁신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IT기술(플랫폼 등)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경영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음
- 이러한 인식하에, EU·일본·중국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의 총아로 집중 육성 중

* '00년초 EU 페이팔, 日 라쿠텐, '15년 中 텐센트·알리바바 등

-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T기업이라도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은 은행지분 4% 보유)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4% 지분으로는 핵심 IT기술을 선뜻 은행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은 또 하나의 기존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자회사가 될 우려

□ 따라서,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현행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예컨대,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 등

○ 또한, 은행법령에 따라 IT기업 대주주의 적격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행 충족명령 및 지분 처분명령 등이 가능함

※ 인터넷전문은행 입법과 관련,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혁신 DNA를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윤호영 /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위기의 한국 금융, 변화와 실험이 필요하다

- 금융위기 이후에도 2조 원대에 달했던 우리나라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수익모델 악화와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1조원대로 하락함. 저성장·침체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발굴 및 비대면 채널 개발,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투자보다는 고신용자·대기업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함.
-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계층이 점차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 근간을 위협하고 있음.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년 기준 170%를 돌파하며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됨.
 - * '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 대부잔액은 13.26조 원 평균 금리는 28%로, 거래자 268만 명 중 4~6등급 신용자가 22%, 7~10등급 신용자가 78%에 이룸 (2016 금융위 등 부처 합동)
-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대가 온다

- 4차산업의 시대, ICT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비용 절감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금융’을 제안. 인터넷전문은행은 바로 ‘핀테크 시대의 금융 혁신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EU 등은 이미 10년 넘는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혁신적 실험을 확대하며 세계시장의 흐름을 주도함.
 - * SFNB(미) ‘95년 설립, 재팬넷뱅크(일) ’00년 설립, 에크뱅크(영) ‘95년 설립
 - * 중국, ‘15년 MyBank(알리바바), WeBank(텐센트) 설립
- 우리나라는 ‘02년 첫 시도가 무산된 지 15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카카오뱅크·K뱅크)이 출범 예정임(25년 만의 새로운 은행).

□ ‘또 하나의 은행’ 이 아닌 ‘또 다른 은행’

-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름.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 DNA를 갖춘 IC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으로, 이들이 보유한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능력, 시스템 노하우, 제휴 능력을 바탕으로 운영함.
- 무점포 운영, 핀테크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수수료 인하,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신용상품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간단)한 방식으로 제공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변화

- 계좌개설부터 지급결제, 대출 등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 완결성을 갖춰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빠르고·간편하며·효율적인”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함.
 - * 카카오뱅크 주요 서비스(안)
 - 지급/결제 : 앱투앱 간편결제, 간편송금으로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 여신 : 전월세 담보대출, 소상공인 및 중신용자 대출
 - 수신 : 특화 예금 서비스 및 현금과 포인트 등 선택형 이자 지급 시스템
- 특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는 국내 경제구조 상 금리 사각지대에 노출된

중신용자에 10%이하 합리적 중금리 대출 시 약 2조 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중신용자(4~6등급) 전체 32만 명(21.6%), 평균 대출금리 약 22%
(행자부'15년 발표 인용)

○ 카카오템크가 은행시장 안착 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핀테크 분야
활성화 등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 전망

* 카카오템크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① 여신 : 중신용자 대상 연 10% 이하 중금리 대출로 약 900억원의 고객 이자절감
- ② 지급결제 : 온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 약 400억원 비용절감
- ③ 송금 : 국내외 송금 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으로 타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유도
- ④ 수신 : 금리와 주주사 제후를 통한 현금이자보다 높은 포인트 이자 제공

* 카카오템크 출범에 따른 고용 및 산업효과

2026년까지 직간접적으로 7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API
제공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상품 서비스 개발 협업, 핀테크 업체 투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 육성 기대

□ 은행업, 기존 플레이어들의 특권 아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ICT기업의 주도적 참여에
우려의 시선 있음.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업의 중요도와 금융리스크의 파급력을 감
안한 신중한 접근은 타당하나, 중요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떤 전략과 목표
로 시장에 접근하느냐' 임.

○ 해외 성공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명확한 소비자층에 사업역량을 집중.
AllyBank(美, GM계열사), Go Bank(美, 월마트), Rakuten Bank(日,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중소 상공인 및 서민층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괄목할만
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비금융업체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은행업 자산 기준 5% 미
만으로 명확한 전략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이 같은 자산 규모
는 유사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분임.

* MyBank(중, 30%), WeBank(중, 30%), JibunBank(일, 50%), RakutenBank(일,
100%), Yaap(스, 33%), Paypal Bank(EU 100%), Pitney Bowes(미, 100%) 등

*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10년 후 총자산 47조원으로 성장 예상 (IBK투자증권 분석, '16년 3분기말 현재 국내 은행 전체 자산 규모 대비 2% 수준)

- 또한 각 분야 Top-Tier 업체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지원확약을 통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확고한 은행업 감독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임.

* 카카오뱅크 참여업체 :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베이(G마켓), 넷마블, YES24,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 K-뱅크 참여 업체: KT,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포스코ICT, 알리페이 등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무엇에 달려 있는가

-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현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
-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본래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한 채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에 그칠 수밖에 없음.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임.
-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현행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된 자산운용 제한을 두고 있음. 특례법 적용 범위를 사실상 ICT 기업으로 제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발의일 순)

	은행법 개정		특례법 제정		
	강석진 의원	김용태 의원	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익동 의원
자본금 한도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지분 한도	50%	50%	34%	34%	50%
적용 대상	총수 대기업 제외	-	총수 대기업 제외	총수 대기업 제외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금지	금지	금지	10%
기 타			'19.12.31일까지 인가 은행에 적용	5년 주기 인가 적격심사	

□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기대하며

- 미국, 중국, 일본 등 인터넷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국들은 이미 자국 경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정보수집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알리페이는 이미 국내 대기업,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시장 적극 공략중이며, 명동 등 중국 관광객들의 알리페이 지급결제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 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은행이라는 '통제된 상황'에서 ICT 기업 주도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혁신허브(innovation hub)로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문제는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은행 출범 및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뒀을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시민단체의 합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메모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발행일 2017. 02. 02

발행처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전해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전해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홈페이지

국회의원 이학영 <http://ofthepeople.kr/>

국회의원 전해철 <http://blog.naver.com/jhc05>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카 카 오 뱅 크 · K 뱅 크 등 인 터 넷 전 문 은 행 출 범 문 제 진 단 토 론 회